규제영향분석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목 차>

1.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이름	오세영
	담당부서(과)	투자회수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박용순		연락처	042-481-4488
	과장	전세희		이메일	roach530@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전문엔젤제도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가 요구됨
□ 등록요건 관련 변경사실의 보고를 의무화 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투자, 경력 및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변경시 반기별, 수시 보고를 의무화함</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피규제집단 : 전문엔젤투자자 170명('20.6.30 기준)
□ 이해관계자 : 엔젤투자자 22,753명(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기준)</td></tr>
<tr><td>9.규제목표</td><td colspan="3">□ 전문개인투자자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엔젤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시장내 개인투자의 질적 활성화를 기대</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큼</td></tr>
<tr><td rowspan="2">기타</td><td>12.일몰설정
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r><td>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해당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법 제72조,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구분 및 시기 가. 정기보고 :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 나. 수시보고 : 매월 말일 2. 보고항목 가. 정기보고 : 투자실적(투자일, 투자액, 투자유형, 피투자기업 등) 나. 수시보고 : 변경된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정보, 변경된 투자실적, 변경된 경력 및 자격정보 ②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벤처투자시장의 개인투자자 활성화로 전문엔젤제도(확인제)가 전문개인투자자(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투자, 경력 및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시 그 내용의 보고를 의무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미규정
	내용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함
규제대안	대안명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규정
	내용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관련사항 변경시 반기, 수시 보고의무를 부여

○ 규제대안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 전문개인투자자의 의무 경감	- 등록증 발급후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전문개앤투자자의 투자 전문성 부족
규제대안	- 등록후에도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이 유지할 의무를 부여	-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부담

○ 선택 근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관련사항 변경시 전문개인투자자는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 가장 최소

한의 방법으로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계기관, 전문개인투자자	동 고시 개정에 대한 위탁 업무기관 의견 청취 및 전문개인투자자 의견수렴('20.5월)	의견 반영

3. 규제목표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전문개인투자자의 전문성을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시장내 개인투자의 질적 활성화라는 규제 목적에 부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에 보고의무를 부여,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위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에 반기별, 월별로 업무운용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대통령령 제304365호, 시행 2020.2.21.)

제40조(보고와 검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및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65호, 시행 2020.2.18.)

제30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주주 명부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고 내용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등록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o 동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개인투자자의 의견을 파악 및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힐 계획

3. 종합결론

○ 목적에 따른 수단이 비례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아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